

『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6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0일

제11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-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조정
- 국민생활관 대인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일부를 타지역 국민생활관 및 우리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코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탁운영 기간 조정
 - 조례 제14조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 → 5년 이내

- 사용료의 조정 : 300원 ~ 10,000원 인상(별표1 및 별표3)
- 〈수영장 월회원〉
 - 성 인 : 40,000원 → 50,000원
 - 청소년·군인 : 34,000원 → 42,000원
 - 어린이·노인 : 28,000원 → 35,000원
- 〈수영장 일일개인〉
 - 성 인 : 2,500원 → 3,000원
 - 청소년·군인 : 2,200원 → 2,500원
- 〈수영장 일일단체〉
 - 성 인 : 2,000원 → 2,500원
 - 청소년·군인 : 1,700원 → 2,000원
- 〈헬스장 성인〉 30,000원 → 35,000원
- 〈에어로빅장 성인〉 25,000원 → 30,000원
- 〈무대조명〉 시간당 20,000원 → 1회(4시간기준) 30,000원

라. 참고사항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
- 전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고, 시설물 사용금액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.
-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운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「조례 제14조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시까지」를 「5년이내」로 조정하고,

국민생활관의 수영장 및 헬스장 등 대인사용료와 무대조명 등
부대시설물 사용료 일부를 물가상승과 타지역 국민생활관 및
우리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

수영장의 경우 일일개인 청소년 및 군인은 2,200원에서 2,500원
으로, 월회원 성인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사용료
일부를 300원 ~ 10,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